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설치〉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65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이자 · 우재준 · 유용원 · 김소희 · 김위상 · 조지연
김형동 · 김미애 · 신성범 · 이상휘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3. 12.

3. 회 부 일 : 2025. 3. 13.

※ 의안번호 : 886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과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종합성과 정책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함으로써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의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며,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률과 예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45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45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u>사항</u> 나. (생략) 15. ~ 17.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가. ----- <u>사항</u>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과 이와 관련된 법률은 제외한다) 나. (현행과 같음) 15.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① <u>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둔다.</u>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현행	개정안
	를」 등과 이와 관련된 법률안 심사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다) 및 결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비심사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 제시 3.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건 심사 ②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

현행	개정안
	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선임에 관하여서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⑦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오늘날 인류는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의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있음.

제22대 국회는 2025년 3월 13일,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¹⁾에 따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구

1)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성하였음.

국회가 의결한 바에 따르면, 동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 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결산 등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기한은 2026년 5월 29일까지임²⁾.

개정안은 ①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상시적으로 전담할 기후위기 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 ②현행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며, ③기후대응 기금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예·결산에 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를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제21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던 바 있음. 제21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2년 12월 8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한시적인 활동기간과 입법권 및 예산심의권의 미비로 인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제21대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구성일	위원선임일	위원정수	활동기간	법안심사권
2022.12.8.	2023.2.7	18명	2022.12.8. ~ 2024.5.29. (23.11.30. 활동기간연장)	없음

원회의 예비심사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설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회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의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력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2026년 5월 29일), 진행경과 및 활동성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또는 개정안과 같이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둘째, 상설특별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것으로, 개정안은 법률안 심사권만 부여하고, 기후대응기금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견제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후대응 관련 정책·재정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조정·심사를 위해서 ①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해당하는 심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②국회 예산안 심사의 3단계(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본회의 의결) 및 효율적인 의견반영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3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안·김소회의원안·박지혜의원안)³⁾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2] 개정안별 주요내용

구분	허영의원안 (2024.6.24)	김소회의원안 (2024.7.30.)	박지혜의원안 (2024.8.8.)	개정안 (2025.3.12.)
명칭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심사 권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예산안 및 결산 예비심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결산 예비심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결산 예비심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과 이와 관련된 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결산 관련 상임위 의견제시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건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안건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건
	※ 소관사항 심사 시 §81·§84에따른 소관 상임위로 간주		※ 소관사항 심사 시 §81·§84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로 간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타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제시 할 수 있고, 소관위는 그 의견을 존중		
위원 선임· 임기	18명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로 위원 수 결정 ※ 환노위원 전원 당연직위원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원내 모든 정당 참여 원칙, 비교섭단체 소속의원을 포함하여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3) 이들 안건은 위원회 명칭, 심사 대상 안건의 범위, 위원 구성기준 및 시행일 등에서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

구분	허영의원안 (2024.6.24)	김소회의원안 (2024.7.30.)	박지혜의원안 (2024.8.8.)	개정안 (2025.3.12.)
	의장이 선임 2년	의장이 선임 (명문의 규정 없음)	의장이 선임 2년	1년
위원장	· 특위 위원 중 임시의장 선거의 예4)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 임기와 동일			
비고	· 특위 활동기간 관련 조문(\$44②·③) 비적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공포한 날	공포 후 3개월	공포한 날

[표-3] 개정안별 제45조의2(신설 조문) 대비표

허영의원안	김소회의원안	박지혜의원안	개정안
제45조의2(기후위기 특별위원회) 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하여 기 후위기특별위원 회를 둔다. 1. 기후변화, 온 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탄 소중립 등 기 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의 심사 2. 기후변화, 온 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탄 소중립 등 기 후위기 대응과	제45조의2(기후 위 기 특별 위원 회) ① 기후위기 대 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특별위 원회를 둔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 색성장 기본 법」, 「온실 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 률」 관련 법 률안의 심사 2. 기후대응기금 의 예산안 및	제46조의4(기후 위 기 대응특별위원 회) 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사하기 위 하여 기후위기대 응특별위원회를 둔다. 1.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탄 소중립·녹색 성장 기본 법」, 「온실 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 률」 및 탄소 중립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제45조의2(기후위기 대응특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특별위원회를 둔다. 1.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 본법」, 「온실 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과 이와 관련된 법률안 심사 2.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 본법」 제69조에

4)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허영의원안	김소희의원안	박지혜의원안	개정안
<u>관련된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u> 3.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	<u>결산의 예비심사</u> 3.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	<u>관련된 법률안의 심사</u>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다)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3.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의 심사	<u>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다) 및 결산</u> <u>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비심사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제시</u> 3.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건 심사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제81조 및 제84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제1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제81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	
③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8명으로 한다. 이 경우	③ 소관 위원회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③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8명으로 한다. 이	②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허영의원안	김소희의원안	박지혜의원안	개정안
<u>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u>	<u>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u>	<u>경우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u>	<u>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u>
<u>④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④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1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선임한다.</u>	<u>④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③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u>	<u>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u>	<u>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u>	<u>④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u>

허영의원안	김소희의원안	박지혜의원안	개정안
<u>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u>	<u>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u>	<u>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u>	<u>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u>
⑥ <u>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⑥ <u>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⑥ <u>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⑤ <u>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⑦ <u>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u>	⑦ <u>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u>	⑦ <u>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u>	⑥ <u>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선임에 관하여서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u>
⑧ <u>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⑧ <u>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⑧ <u>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⑦ <u>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문 의 처

02)6788-5014